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094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6년 4월 7일
- 회 부 일 : 2016년 4월 12일

2.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을 위원회 간사자격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공무원) 위원을 ‘1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에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2명’으로 변경하고 감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 나.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실시 근거 신설(안 제6조제5항).
-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자격을 ‘감사위원장’에서 ‘공직윤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에 민간인국외여비 반영

5. 검토 의견

가. 위원 구성 변경

- 안 제2조제1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현행 위원위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호는 위원회 구성 시 ‘1급 이상인 서울시 소속 공무원 2명’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을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 -----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u>서울특별시회의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u> 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 ----- ----- -----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u> 와 ----- -----.
2. 4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 2명과 1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회의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시의회의장의</u>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 ----- ----- <u>시의회</u> ----- -----.

①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 안 제2조 제1항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에 이미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40%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도 성별과 직능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음.

※ 성별만을 강조한 경우에 위원회 구성의 필수요소가 배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제1항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호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 협의 대상 변경

-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서울특별시의회’로 협의의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의회의 권한은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능이 아닌 의회에 부여된 것이고(대법원 1992.7.28.선고 92추31판결),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대법원 1994.4.26.선고 93추175 판결)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협의의 대상을 ‘시의회 의장’에서 ‘시의회’로 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9조(의장의 직무)에 명시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실제 시의회의 운영상 의장이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만 시의회를 대표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장은 의회권한(「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 구성 중 공무원의 자격변경

- 안 제2조제2호의 감사위원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는 것과 안 제15조 제2항의 위원회 간사를 감사위원장에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2007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이 변경·축소되어 역할과 위상이 축소된 바, 1급 공무원의 위촉 또는 임명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적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도 소관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시 실·국장 이하의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법률 제8098호 「공직자윤리법」, 2006.12.28.공포, 2007.6.29. 시행 :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동일기준에서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직윤리 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됨.

- 다만, 서울특별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상이 축소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다른 시·도 대부분이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

<타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무원 임명 현황>

구분	공무원인 위원 임명 (2명)	간 사	비고
서울	1급 이상인 소속 공무원	감사위원장	
부산	기획행정관, 감사관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	
대구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인천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	
광주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대전	자치행정국장, 감사관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	
울산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세종	소속 공무원	공직윤리업무 담당사무관	
경기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강원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충북	소속 공무원	공직윤리 담당사무관	
충남	소속 공무원	공직윤리 담당사무관	
전북	소속 공무원	감사총괄 담당사무관	
전남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경북	소속 공무원	공직윤리 담당사무관	
경남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제주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나. 공직윤리 해외비교연수 근거 신설

○ 안 제6조제5항은 위원회가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과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위원회에서는 청렴관련 정책과 윤리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위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 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제112조와 제114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¹⁾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아닌 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법령·조례·중앙정부 지침 등 관련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령·허가할 것임을 밝혀 공무국외여행의 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청렴관련 정책과 윤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해외연수 현황(2011~2015년, 2015년 방문단미구성, 2010년 미 실시)

연 도	연수국 및 방문기관	연 수 인 원	방 문 기 간
2014년	덴마크(의회 옴브즈만), 네덜란드(시 옴브즈만, 공직윤리국) 독일(법무부)	위 원 : 3 공무원 : 2	10.5~10.12 (6박8일)
2013년	핀란드(의회 옴브즈만), 스웨덴(지자체협의회), 노르웨이(의회 옴브즈만)	위 원 : 2 공무원 : 2	10. 6 ~ 10.13 (6박8일)
2012년	호주(시드니시청, 범죄와부정위원회)	위 원 : 2 공무원 : 1	10.29 ~ 11. 3 (4박 6일)
2011년	영국(런던시청), 포르투갈(부패방지위원회), 스페인(마드리드시청)	위 원 : 2 공무원 : 2	9.18 ~ 9.25 (7박 8일)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154(2015.08.24.)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 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제112조와 제114조 위반 사항 통보

□ 2016년 해외연수 계획

○ 연수 목적

-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를 비교 연수하여 청렴
시책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청렴도시 경쟁력 강화

○ 연수일정 : '16. 5. 31(일) ~ 6. 4(토)

○ 연 수 국 :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 공직자윤리위원 국외 여비 : 15,000천원(공무원 여비 별도)

○ 연수인원 : 5명(위원 3, 직원 2)

- 현재 서울시의 청렴도는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청렴정책과 윤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간위원의 공무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 김 태 한
입법조사관 : 정 찬 일